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2. 13.
운영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발의일자: 2022년 11월 10일
- 나. 발 의 자: 이순우 의원 외 3명
- 다. 회부일자: 2022년 11월 18일
- 라. 상정일자: 제241회 2022년도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2. 12. 5.)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순우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9대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2023년~2026년)을
조례에 반영

나.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안 별표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따라
개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9대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위한 개정이므로 법률상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59
번 호	

발의연월일: 2022년 11월

발 의 자: 이순우, 유승용, 우경란
양송이 의원(4인)

1. 제안이유

서울시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라 제9대 영등포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에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3년도 월정수당을 2,845,44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별표2)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2. 11. 10. ~ 11. 14.):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제3항 관련)

구 분	지 급 액
1년차('23년도) 월정수당	2,845,440원

비 고 : 2~4년차('24 ~ '26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u>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제3항 관련)</u> <table> <tr> <th>구분</th><th>지급액</th></tr> <tr> <td>1년차('19년도)</td><td>2,762,570원</td></tr> <tr> <td>월정수당</td><td></td></tr> </table> 비고 : 2~4년차('20 ~ '22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서 동결한다.	구분	지급액	1년차('19년도)	2,762,570원	월정수당		[별표 2] <u>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제3항 관련)</u> <table> <tr> <th>구분</th><th>지급액</th></tr> <tr> <td>1년차('23년도)</td><td><u>2,845,440원</u></td></tr> <tr> <td>월정수당</td><td></td></tr> </table> 비고 : 2~4년차('24 ~ '26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u>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다.</u>	구분	지급액	1년차('23년도)	<u>2,845,440원</u>	월정수당	
구분	지급액												
1년차('19년도)	2,762,570원												
월정수당													
구분	지급액												
1년차('23년도)	<u>2,845,440원</u>												
월정수당													